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39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청년청장 김영경)

가. 제안이유

-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청년활동과 청년공간의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 업무의 수행, 청년들의 자립 실험 공간인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에 따라
-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1층), 22동	
지 원 시 설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문카페, 자립실험 공간	
위 치 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신규) ※ 기존 위탁기간 : '18.1.1. ~ '20.12.31.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시설 운영 일체

① 시설 관리 운영(청년허브, 청년청)

- 운영시간 : 09:00~21:00(상황에 따라 변경운영 가능)
- 이용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시설관리 : 유지보수, 공간대여 등

② 청년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①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 도시의 생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과 도시를 연구
- 청년들의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청년이슈 발굴 및 공론화
- 청년과 시민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축적·공유

③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소규모 커뮤니티의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그룹을 지원 등
- 청년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해 활동 중인 청년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
-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관련된 연구 수행

④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창의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홍보 지원

- ⑤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 가업/창업/부업을 주제로 하는 청년 직업실험의 지원
 - 청년들의 자립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의 지원 및 협력 프로젝트 진행
 - 일과 자아실현을 연결시키기 위한 창의적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 ⑥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 ⑦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 지역상생 교류사업 운영 등
- ⑧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3,284백만원('21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센터 운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과 청년당사자, 청년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의 구성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창의성 제고가 필요
- 시설관리, 연구 수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영 시 정원 증원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운영의 효율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2012년 10월 최초 동의)²⁾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청년청은 청년단체의 입주공간인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을 직접 관리해 오다가 금번 동의안에는 청년 허브 운영사무에 동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음.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초 민간위탁은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었음.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창의성 제고가 필요한바, 민간기관에서 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서울시 청년허브 개요

서울시 청년허브 개요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구분	공 간 명		면적(㎡)	공 간 활 용 내 용
	규모	사무실	소 계	140.89
사무실			51.98	센터운영 총괄사무 공간
부속 사무실			17.56	센터운영 사무 공간
운영관리팀			21.06	센터운영 및 지원 사무
기반조성팀			24.09	공간 및 입주단체 관리 사무
센터장실			26.2	센터장 사무 및 회의 공간
전용공간		청년단체 등 공간지원 (10실)	175.95	청년단체, 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지원 청년허브의 협업 파트너들과 기획 프로젝트 단체들을 위한 사무 및 회의 공간
		세미나실	64.88	분야별 수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목적 강당	264.7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등
		창문카페	10.45	청년허브를 방문하는 개인 및 단체들을 위해 식음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대의 요소를 조성하는 공간
	창문카페(대관공간)	38.4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발표회 등	
	창고(세미나실, 미달이)	42.11	기자재 및 소모품 보관 공간	
공용공간	다목적 강당	1144.38	복도, 화장실, 공용 사무 및 회의 공간 등	

○ 정 원: 총25명(정규직 25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정 원	25명	1명	2명	2명	2명	9명	9명
직 책	-	시설장	실장	팀장, 팀원			
주요업무	-	시설총괄	실 총괄	기획 · 조정 / 부서 총괄 / 업무집행			

○ 조직도 및 주요기능

```

graph TD
    A[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센터장] --- B[운영위원회]
    B --- C[자산운영실]
    B --- D[연구협력실]
    C --- E[ ]
    C --- F[ ]
    C --- G[ ]
    D --- H[ ]
    D --- I[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운영관리팀 - 예산관리 - 인사조직관리 - 계약관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기본조성팀 - 공용/입주/자립실협공간지원 - 자산관리/대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청년지원팀 - 청년활동지원 - 커뮤니티지원 - 직업실현지원 - 데이터 관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협력기획팀 - 신규사업 기획 - 민간협력 - 공공자원 연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교류협력팀 - 지역교류 - N개의 공론장 - 허브투어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연구홍보팀 - 아시아 청년 연 - 활동가 플랫폼 (AYARF) - 기획연구(정책) - 기획연구(사업) - 홍보 </div> </div>
소요예산	3,128백만원(2020년)
수탁기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2018.1.1.~2020.12.31.)

- 서울시 청년허브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 ('21. 1. 1. ~ '23. 12. 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시설 운영 일체

1] 시설 관리 운영(청년허브, 청년청)

- 운영시간 : 09:00~21:00(상황에 따라 변경운영 가능)
- 이용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시설관리 : 유지보수, 공간대여 등

2] 청년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①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정보 집적과 공유**
 - 도시의 생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과 도시를 연구
 - 청년들의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청년이슈 발굴 및 공론화
 - 청년과 시민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축적·공유
- ③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소규모 커뮤니티의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그룹을 지원 등
 - 청년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해 활동 중인 청년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

-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관련된 연구 수행
- ④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창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홍보 지원
- ⑤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 가업/창업/부업을 주제로 하는 청년 직업실험의 지원
 - 청년들의 자립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의 지원 및 협력 프로젝트 진행
 - 일과 자아실현을 연결시키기 위한 창의적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 ⑥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 ⑦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 지역상생 교류사업 운영 등
- ⑧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근거 (2012년 4월)하여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 서울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2015년 1월)이후 명칭을 변경(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 → 청년허브)하였고, 최초 민간위탁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청년 허브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2.4월
- <최초위탁>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제240회) 부결 : '12. 9. 10.
 - 사유 :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공정성,공공성 확보 곤란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 '12.10.12.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2.10.15.
 -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12.11.21.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위수탁 협약 체결 : '12. 12. 14. ~ '14. 12. 13.(2년)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개관 : '13. 4. 11.

<재계약>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 : '14. 8. 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4. 8. 18.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256회) : '14. 9. 25.
- 청년기본조례제정('15.1.1.)에 따른 명칭 변경 : '15.1.1.(청년일자리허브 → 청년허브)
- 위수탁 협약 체결(재계약) : '14. 12. 14. ~ '17. 12. 31.(3년)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7. 9. 22.
-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 : '17. 11. 16.
-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276회) : '17. 8.
- 위수탁 협약 체결(재위탁) : '18. 1. 1. ~ '20. 12. 31.(3년)

<신규위탁(공모)>

-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 6. 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신규위탁) 통과 : '20. 7. 8.

- 청년 허브는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연구 및 개발, 청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청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 청년청은 청년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시장의 다양성, 사업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 청년허브의 민간위탁(재위탁)은 현재 수탁받은 기관의 성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 민간의 영역에서 동 센터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다양성과 경쟁력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한 위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 유사 중복 사무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서울시 청년허브의 위탁사무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주요성과>

□ 사업분야별 실적 및 성과

1) N개의 공론장 운영

- N개의 공론장 운영
 - 기획형 공론장 총 19회 실행 (2개년)
 - 너른형 공론장 총 14회 실행 (2개년)
- 기록전문가 그룹을 통한 기록 발신 및 결과 콘텐츠화
 - 8인 73개 기록, 9개 영상 발신 (2개년)
 - 가이드 사이트 공유 및 웹게시판 및 전체 기록 편집물 제작
 - 뉴미디어와 제휴 등 기록물 확산 방안 강구
- 아젠다 및 청년 주제 발굴
 -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환이 가능한 아젠다, 시의성 높은 청년 이슈 및 도시 서울의 아젠다 중심
 - 미래세대 사회문제 대응 가능한 청년 주제 발굴, 현장 기반의 전문성 높은 청년활동 주제 발굴
 - 일반 시민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시민 참여 대화의 장 기반 구축
 - 청년 아젠다 동향 파악 및 코로나19 동향 파악을 통한 리스크 관리
- 전문가 POOL 확보
 - 다층위 다분야 전문가 확보 및 관련 자원연계 가능성 탐색
 - 유관기관 및 관련 소셜섹터간 경계를 넘는 협력 방안 마련
- 지원체계 구축
 - 청년주체 활동의 지속성 및 연계방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민주주의서울 연결 시도, 후속모임 독려)

2) 정책 및 활동연구

- 연구 진행
 - 2018년 : 10건

- 2019년 : 기획연구 4건, 공모연구 9건 ((재)카카오임팩트 협력진행)

○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리서치 펠로우십 운영

- 연구와 실천, 소통 역량을 갖춘 청년 액티비스트리서치 발굴

▶ 아시아 7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인도, 필리핀, 한국) 20명의 액티비스트리서치를 발굴

▶ 청년과 환경, 디지털기술, 목소리 세 분야 주제의 펠로우 모집, 서울혁신파크에서 10박 11일 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콘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리서치, 결과 발표 등 참여

▶ 20개의 연구활동 결과물 생산 및 확산

- 민간·국외 전문가 연계(19명), 지역사회 파트너 발굴 및 교류(38건), 전문가 인터뷰(40건)

- 참가인원 총 389명, 참여기관 및 단체 총 41개, 언론보도 총 28건

- 기획연구(1건), 아카이브 홈페이지 구축 및 유튜브 채널 운영(각 1개)

3) 청년활동지원

○ 청년 커뮤니티 지원

- 청년 커뮤니티 지원 : 884개 커뮤니티 선정 및 지원

- 네트워킹 행사 개최 : 반상회 8회

- 사업 추진 관련 행사 : 사업설명회(3회), 오리엔테이션(8회), 자문회의(5회)

○ 청년 프로젝트 지원

- 청년 프로젝트 지원 : 43인·단체 선정 및 지원

- 사업 추진 관련 행사 : 사업설명회(2회), 오리엔테이션(4회), 결과공유회(2회), 자문회의(1회)

- 참여자 역량강화 : 컨설팅(25회)

- 지원사업 연구 및 보고서 발간 1건

○ 청년 직업실험 지원

- 청년 직업실험 지원 : 39인·단체 선정 및 지원

- 사업 추진 관련 행사 : 사업설명회(2회), 오리엔테이션(2회), 결과공유회(2회)

- 참여자 역량강화 : 브랜딩/회계/저작권 교육(3회), 멘토링(36회)

○ 청년문화 프로젝트 지원

- 행사 개최 : 청년단체 연계형(2회), 지역공간 연계형(8회)

- 청년활동 및 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 칼럼(39개), 영상(1개)

- 청년정책 관련 설문조사 1건

○ 서울시 청년공간 협력사업

- 협력사업 : 지원사업 공동설명회(1회), 커뮤니티 포럼(1회)

-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 1건

- 기관 간 협력회의 18회

4) 청년공간 지원 및 공간 활성화

○ 입주공간 지원

- 미달이 사무실(실험실) : 2018년 8팀, 2019년 9팀, 2020년 8팀

- 청년허브 창문카페 : 2018년 1팀, 2019년 1팀, 2020년 1팀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공간 : 2018년 54팀, 2019년 50팀

- ▶ 입주단체 활동공간 조성 및 개선 : 회의실, 사진촬영공간, 공용제작공간, 연습실 등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자립실험실 : 2018년 5팀, 2019년 5팀, 2020년 2팀
- 청년 공간 운영 지원
 - 2018년 5개 청년 공간
 - 청년공간 발굴 및 청년 커뮤니티 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 지원
 - 청년 활력공간 지원사업 운영(14개 공간, 7개 자치구), 청년활@공간 지원(5개 공간, 3개 자치구)
- 입주단체 활동 홍보 및 아카이빙
 - 홍보물 제작 : 2018년 청년청 리플렛 1종/개별 단체 홍보물 25종, 2019년 공간별 리플렛 3종/단체 소개 책자 1종, 2020년 단체 소개 책자 1종
 - 아카이빙 : 2018년 청년청 입주단체 25개팀/자립실험실 5개팀 인터뷰, 2019년 미담이 입주단체 15개팀 인터뷰/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아카이빙 및 분석 연구 협력
 - SNS 홍보 : 2018년 58건, 2019년 110건, 2020년 24건
- 입주단체 네트워크 모임
 - 교류회 2018년 16회, 2019년 13회, 2020년 3회
- 공용 공간 운영
 - 방문카페 연 이용객 : 2018년 3만9천명, 2019년 4만2천명
 - ▶ 방문객 수 증가(3개년, 약 2만 5천 명→약 3만 9천 명→약 4만 2천 명)
- 대관공간 지원
 - 방문카페(약 30명), 세미나실(약 27명 정원), 다목적홀(약 150명 정원) 공간대관 운영
 - 공간활용횟수 총 130건(3년 총합)

5) 국내교류

-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이주농부>, <별의별 이주OO> 운영
 - 사업설명회 진행, 참가자 135명 (2개년)
 - 지역 기관과의 협력 진행
 - ▶ 2018 청년허브 X 홍성도농교류센터 '청년 지역교류 사업을 위한' MOU 체결(홍성도농교류센터,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플랫폼510협동조합 기관 및 단체 연계 및 협력)
 - ▶ 2019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주관을 통한 재원 2,008만원 유치, 대구경북연구원 측 76만원 재원 유치
 - ▶ 2019 청년허브 X 4개지역 업무협약 체결, 청년허브 X 재단법인 해비핀 업무협약 체결
 - 사업 참여자 84명 (3개년)
 - ▶ 프로그램 확대시행 (1개 지역 → 4개 지역 → 6개 지역)
- 국내지역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진행
 - 8개 지역 총 8회 방문, 간담회 12회 진행
 - 차년도 지역교류사업 대상지로의 가능성 탐색 및 협력체계 구축
 - 현장 방문 모니터링 진행, 만족도 조사 및 구술인터뷰 기록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 활용)

6) 사회적 자원연계

- 지속가능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풀' 상시운영
 - 총 90개소 등록, 자원연계 22건
-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 카카오임팩트재단,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평생학습진흥원 등 50개소
- 전문가 인적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강연 및 컨퍼런스 개최 : 총 12회 786명 참여
-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 서울시 청년공간 10개소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및 무중력지대 8곳) 참여, 상시 협력사업 진행
- 민-관 협력 청년활동 지원사업
 - 〈청년, 1일 1빵빵〉 개최(청년 및 일반 시민 126명 참여)
- 청년의 다양한 삶의 경로 탐색 지원 〈별의별 이주○○〉
 - 사업계획 및 운영, 발전방안 기획연구 2건 진행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포럼 개최(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공동주최, 2019년 12월 2일)

7) 홍보

- 언론홍보 : 언론보도 343건, 취재영상 8건
- 2013-2017 서울의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 아카이브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지자체 청년부서 등 총 685곳 배포
- 온라인 매거진 발행 : 커먼즈 주제, 총 4회
- SNS
 - 페이스북 357건, 팔로우 29,036명 / 유튜브, 비메오, 플리커 등 채널 운영
 - 브런치 콘텐츠 업로드 50건, 조회수 7,766회
 - 입주단체 SNS 게시물 213건
- 홍보 브로슈어 업데이트 제작 : 국문·영문 브로슈어 총 4,500부
- 온라인 뉴스레터 : 구독자 977명, 발간 22회(2019년 8월~2020년 1월)
- 홈페이지 운영 : 총 방문자 396,639명, 게시물 1,509건

※ 서울시장청년허브 내방 기관 : 89개 기관 1,506명 방문 (국외 8개 기관 149명)

- 동 센터의 최근 연도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은 2018년 86.0%, 2019년 89.4%, 2020년 7월 기준 51.4%로 저조한 실정이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2018년	계	3,749	3713	3227	86
	청년허브 운영 (인건비)	1,060	1,060	910	85.8
	청년허브 운영 (운영비)	615	610	521	84.7
	사업비	2,073	2,041	1,795	86.5
	사회적 이해와 공감 확대	750	728	677	90.2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450	431	389	86.4
	정책 및 활동연구	200	198	198	99.9
홍보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0	97	90	90	

	협업에 기반한 공공 플랫폼 조성	1,030	1,022	831	80.6
	청년활동지원	740	738	576	77.8
	청년공간지원	245	239	218	88.9
	청년교육사업	45	44	36	80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293	290	286	97.6
	사회적 자원 연계(N개의 공론장)	120	118	116	96.6
	청년공유자산 모델 프로젝트	43	42	41	95.3
	국내외교류	130	129	128	98.4
2019년	계	2,989	2,989	2,674	89.4
	청년허브 운영 (인건비)	1,091	1,091	908	83.2
	청년허브 운영 (운영비)	351	351	333	94.8
	사업비	1,290	1,290	1,234	95.6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200	200	195	97.9
	이슈발굴을 위한 N개의 공론장	100	100	97	97.2
	정책 및 활동연구	100	100	98	98.6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생산활동 투자	725	725	625	86.2
	청년활동지원	645	645	596	92.4
	청년공간지원	80	80	79	98.7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 마련	364	364	363	99.7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184	184	184	100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100	100	99	99
	홍보 및 아카이빙	80	80	78	97.5
	2020년	계	2,827	1,678	1,463
청년허브 운영 (인건비)		1,306	720	717	54.9
청년허브 운영 (운영비)		331	158	146	43.8
사업비		1,190	800	600	50.4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337	180	99	29.4
이슈발굴을 위한 N개의 공론장		80	30	12	15
정책 및 활동연구		257	100	87	33.9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생산활동 투자		703	580	469	66.7
청년활동지원		633	550	449	70.9
청년공간지원		70	30	20	28.6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 마련		150	90	32	21.3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40	20	13	32.5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70	50	15	21.4
홍보 및 아카이빙		40	20	4	10.0

○ 2019년 결산 기준, 주요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회계 연도 종료시 법규에 따라 민간 정산액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민간 위탁금’을 사고이월(1건, 총 8천 5백만원)시킨바 있고,

※ 사고이월 내역 : 서울청년허브의 「아시아 청년액티비스트리서처 펠로우십, 미래 의제와 청년활동 비전 모색 전문가 초청 워크숍」 ‘사업비’ 8천 5백만원

- 동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청년허브를 수탁하고 있는 동 법인은 ‘여전히 수의계약 기준 미준수, 출장여비 지급 시 운영비 및 간담회비 선 지급, 청년허브의 자의적인 무료 대관규정 시행’ 등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합법적이고 성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2019년 서울시 청년허브 지도 점검 결과〉

사업운영 분야

① 수의계약 기준 미준수

- 수의계약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00만원(부가세 미포함)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청년허브는 아시아 청년연구활동가 펠로우십 총괄 코디네이팅 업무위임(20,684천원), 2019년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운영 업무위임(20,911천원)을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여 체결하였음.
-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서울시 수의계약 지침 준수 필요.

② 국외출장여비 지급 기준 미준수

-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및 민간위탁시설 공통회계 처리기준에 따르면 출장여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출장 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청년허브는 1.10자 출장여비 지급 시 운영비, 간담회비를 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였음.
- 운영비, 간담회비는 출장여비 지급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사용금액 518천원(운영비 75천원, 간담회비 443천원) 전액을 반납 조치하고, 향후 국외출장시 여비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필요.

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① 채용시험 공고기간 미준수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 채용시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하며,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년허브는 3.14.자, 11.1.자 채용공고시 각 14일간 공고를 시행하였음.

- 추후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 후 공고 추진 필요.

② 출근시간 미준수에 대한 조치방안 미비

- 지각 등 청년허브 직원 출근시간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미비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의 6항에 따라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반영하고, 청년허브 정기 근무·성과 평가시 출근시간 미준수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③ 일부 지출서류 미비

- 일부 지출결의서(2019.1.29/4.18/9.10/9.17/9.27) 붙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주요 서류가 미비되어 있음.
- 차후 지출결의서 작성시 당해 지출 붙임서류 구비 철저 필요.

물품 및 시설관리 분야

① 청년허브 무료 대관규정 개선

- 청년허브의 운영규정 36조(사용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허브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기관, 기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으로 사용료를 할인 및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맞게 청년허브 공간 무료대관 기준 개선 필요.

② 소모품 관리대장 미비

-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에 따라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함.
- 향후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필요.

〈2018년 서울시 청년허브 지도 점검 결과〉

사업운영 분야

①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관련 사업관리 부적정

- 청년허브는 운영규정에 따라 청년허브 사업계획, 예산 등 센터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청년허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위원, 청년활동단체, 협력단체, 내부직원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일부 위원의 경우 청년허브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을 직접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② 청년허브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미흡

- 청년허브 기획연구의 경우, 연구의 적정성, 연구범위, 활용용도 등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방지, 정책수요 반영, 신규 정책 발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기획연구 과제가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신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한 후, 연구 전년도에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 필요

※ '18년 기획연구 과제 10건 대부분이 연초에 미리 계획되지 않은 과제임

③ 청년허브 대관절차 부적정

- 청년허브는 청년허브 대관규정 제5조에 따라 대관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가능성·행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청년허브 대관심의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최소한 내부 검토 및 결재 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① 청년허브 채용시험 관련 서류전형절차 부적정

- 청년허브는 직원 공개채용 시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인원의 2~4배수 인원으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2차 필기 및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활동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사표에 총점만 기재하고 있어 향후 서류전형 심사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② 청년허브 직원 경력산정기준 부적정

- 청년허브는 운영규정 별표 '경력환산기준표'를 근거로 환산 경력과 호봉을 산정하고 직원 연봉액을 결정하고 있음
- 실제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모든 직원이 업무동일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경력(80~100%)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기준 등 개선조치 필요

③ 근로계약서 법인 명의 변경 필요

- 민간위탁조례 제2조에 따르면 수탁자 명의로 책임하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위·수탁협약서의 수탁자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날인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청년허브는 근로계약서를 청년허브 센터장 명의로 하고 있어, 센터장 명의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수탁 법인 명의로 변경 조치 필요

④ 초과근무 등 관리 철저히 주52시간 근로시간 개정 준수

-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52시간 모니터링 결과, '18.8월 일부 직원이 주말 행사 등으로 주52시간 초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물품 및 시설관리 분야

○ 물품관리 부적정

- 청년허브에서 운용하는 비품은 비품분류번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 후 현행으로 관리하는 등 비품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함
- 현장점검시 자산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물품사용,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대상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정기·수시 재물조사 실시하는 등 재물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



< 물품 보관창고 일부 >



< 물품 창고선반 >

- 동 센터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퇴사자 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 부적정, 민간위탁기관 자체 자산으로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 감사위원회의 청년청 특정감사 결과(2019년 5월) 등을 살펴보면, 신분상 조치를 포함하여 총 23건의 지적사항³⁾이 적발되었고 기관경고 처분이 있었음.
- 또한, 청년허브의 연도별 해외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근거 없이 민간인의 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민간인 국외출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기부행위⁴⁾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매년 민간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을 추진한바 있음.

3)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도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회수)	감액	기타						
23	4	0	0 (0)	0 (0)	1 (0)			1 (0)	15 (4)	0	0	7	0 (0)	0 (0)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4)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 1호~3호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악

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제목개정 2004. 3. 12.]

〈청년허브 연도별 해외출장 내역〉

연도	추진근거 (방침서)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기간	결과보고서
2017	853	송00	일본, 이탈리아	연수 프로그램 참가	6. 1.~6.12.	8010
	2793	차00 송00	유럽 (헬싱키, 뮌헨, 베를린)	현장탐방	6.12.~6.26.	8011
	853 929	김00 정00	홍콩	해외교류	7.21.~7.25.	7515
	853 6175	송00	일본(도쿄, 후쿠시마)	피스모모 여행학교	11. 2.~11.9.	8009 2018-832
	928 7449	최0 차00 서00 김00	일본(요코하마, 도쿄)	N개의 청년학교	11.30.~12. 3.	7997
2018	1533 3397	김00	홍콩	컨퍼런스 참가	9.27.~9.30.	4466

〈청년허브 해외출장 출장자 현황〉

연도	성명	직급	여비지급내역 (천원)	개인별 출장 결과보고서	동행자 사항 (이름, 소속)
2017	송00	팀장	942	8010	-
	차00 송00	센터장 팀장	1,516 1,192	8011	-
	김00 정00	팀원 팀원	1,106 1,106	8038	박00(영화비평가), 전00(세븐픽처스) 한00(세븐픽처스) 이00(콘삭스) 김00(몸의대화) 성00(인스탕터스) 문00(씨네21)
	송00	팀장	1,008	8009	최00(동번역), 문00(피스모모) 이00(아티스트그룹 '흙') 장00(씨닷) 강00(비취보석사우나) 노표(2017 삶의재구성 코디) 김00(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최진 차00 서00 김00	팀장 팀원 팀원 팀원	291 958 958 958	8017	권00(두름) 서00(도시공감) 황00(나인로드)
2018	김00	팀원	1,210	4466	박00, 박00 (각두기단) 김00, 정00 (스투키스튜디오)

- 특히,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사)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라는 특정단체에게 청년허브 공간을 임의로 무상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바,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규정」

제 9 장 대관운영

제 35 조 (대관운영의 목적) 시설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복합적인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대관 운영의 효율증대와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다.

제 36 조 (사용규정)

1. 시설 이용 시간인 10:00 - 22:00내에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해 대관한다.

2. 시설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한다.

(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허브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기관, 기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으로 사용료를 할인 및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치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의 집회에는 시설 대관을 할 수 없다.

4.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5.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진다.

6.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7. 기타 제반 이용수칙은 공간사용지침에 의한다.

제 37 조 (시설이용료) 서울시 이용료 승인 내역에 의한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나 시설의 경우 승인 내역 안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료) ① 센터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공간별 대관료는 <붙임1>에 따른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사용승인 이후 7일 이내로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청년지원?”⁵⁾이라는 언론의 비판 기사를 보면, 청년허브에서 시행한 ‘청년참’ ‘청년활’ ‘청년참참참’ ‘청년활력공간’ 등 청년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된바 있으며, 청년허브가 단지 서울시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청년허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위반사항으로 의회와 시민의 감시를 회피할 목적의 자의적인 보조금 사업은 아닌지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05. 민간위탁금</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p> <p>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p> <p>-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p> <p>※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p>

-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자율예산 뿐만 아니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등 서울시에서 직접 청년과 청년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바,

5) 문화일보(2019.6.3.)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청년지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0301071427333001>

민간 위탁 청년허브 감사 결과 활동비 2~4년 연속 지원하거나 유사한 활동계획에도 중복지원 직원 채용부실·물품 관리 엉망 4년간 26억 들어간 사업 ‘구멍’

- 청년허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경쟁률이 평균 2:1도 안 되는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연간 평균 260개 팀에 100만원~300만원의 활동비 지원)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사무의 조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허브 공모사업현황〉

연도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불용률(%)
2017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47,150,000	301,772,811	45,377,189	13.1
2017	청년단체사업(프로젝트)지원 사업 <청년활>	322,890,000	283,362,631	39,527,369	12.2
2017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580,000,000	575,488,260	4,511,740	0.8
2018	청년활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51,920,000	295,832,160	56,087,840	15.9
2018	청년활동(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155,202,000	135,331,899	19,870,101	12.8
2018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134,868,000	67,234,583	67,633,417	50.1
2018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청년활@공간>	94,062,000	84,399,200	9,662,800	10.3
2019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383,470,000	342,004,996	41,465,004	10.8
2019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231,900,000	174,875,626	57,024,374	24.6

〈공모사업별 선정자 현황〉

연도	사업명	신청자수	경쟁율	선정자 주요이력	선정방식	선정사유
2017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457	1.57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7	청년단체사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242	9.68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7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7	2.3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475	1.6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동(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활>	237	19.75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69	4.93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8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청년활@공간>	40	8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9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참>	602	2.01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2019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201	7.44	다수	심사에 의한 선정	고득점

- 또한, 청년허브에 위탁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최근 3년간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용역 현황〉

연도	용역사업명	계약기간	집행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수행단체(개인)	결과 공개여부	공밀
2017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운영 계획연구 기타	17. 5.22.~17.10.27	20,000	지사체법률 시행령 25조 행자부 예규 5장 22절	프로젝트 노아	공개	18.1
	2030 청년조기퇴사의 원인과 방안 모색 연구 노동/정치	17. 6. 9.~17.10.31.	10,000		퇴사학교 주식회사	공개	18.1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기타	17. 9.19.~17.11.17.	15,000		사회혁신공간데어	공개	18.1
	청년세대 통일외식 조사 연구 공동체 /지역	17. 9.29.~17.11.17.	5,000		고강섭	공개	18.1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 연구 교육/학습	17. 9. 1.~17.10.27.	11,000		커리어투어	공개	18.1
2018	서울형 갭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교육/ 학습	18. 9.12.~18.12.21.	22,000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공개	19.1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 폼 구축방안 연구 공동체/지역	18.10.2.~18.12.21.	15,000		재단법인 LAB 2050	공개	19.1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공동체/지역	18.10.22.~18.12.14.	15,000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개	19.1
	청년허브 지원사업 맥락분석 연구 기타	18.10.19.~18.12.14.	33,000		주식회사 도원교육	비공개	-
	청년허브 데이터 통합 및 지원사업 관리 를 위한 DB 구축 기타	18.10.22.~18.12.14.	16,500		코드나무	비공개	-
	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노동/정치	18.10.19.~18.12.14.	11,000		나라살림연구소	공개	19.1
	청년학교 방향성 정립 및 교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학습	18.10.19.~18.12.14.	16,500		주식회사 인생도서관	공개	19.1
	청년생생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 연구 (을지로 지역의 2차 및 4차 산업을 중 심으로) 공동체/지역	18.10.22.~18.12.14.	37,800		저스트프로젝트	공개	19.1
2019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의 작동에 관한 탐 색적 연구 공동체	19. 4.30.~19. 9.30.	15,000		듣는연구소	비공개	-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이 주 00' 확대 및 발전방안 공동체/지역	19. 7. 5.~19.11.10.	16,500		마을학회 일소공도	비공개	-
	청년 창의생산활동 공간 가이드라인 연 구 공간/지역	19. 8.26.~19.11.28	15,000	재단법인 걸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비공개	-	
	아시아 액티비스트리서처 펠로우십 프로 그램 디자인 기타	19. 9.11.~19.11.10.	27,500	주식회사 씨닷	비공개	-	

- 서울시에서는 2019년⁶⁾ 당시 1천5백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청년허브에서는 2천만원 이상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⁷⁾과의 용역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법적인 계약 행태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청년허브 1천만원 이상 용역 현황〉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2017	1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운영 계획연구	수의	'17. 5.22.	20,000	20,000	프로젝트 노아	2794
	2	2030 청년조기퇴사의 원인과 방안모색 연구	수의	'17. 6. 9.	10,000	10,000	퇴사학교주식회사	3204
	3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수의	'17. 9. 1.	11,000	11,000	(주)커리어투어	5303
	4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청년기 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및 이슈포럼 기획, 운영	수의	'17. 9.14.	14,950	14,950	청년유니온	5732
	5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연구	수의	'17. 9.19.	15,000	15,000	사회혁신공간데어	5769
	6	청년활력공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수의	'17. 9.21.	13,000	13,000	리윤익	5892
	7	청년창업 민상회 기획 및 운영	수의	'17. 9.26.	11,000	11,000	비따비	6138
	8	2017 청년창업 활동비 정산	수의	'17.10.16.	14,750	14,750	류준열 세무회계사무소	6482
2018	9	청년허브 홍보물 및 아카이브 책자 제작	수의	'18. 7.10.	43,400	43,400	포씨씨랩	2813

6)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업체 지원을 위해 2천만원으로 상향

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계약시 참가자격 등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 포함) 두고 있어야 하며, 제35조에서 수의계약도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 탈루 가능성, 특혜성 시비, 과업 수행이후 정산 및 과업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 심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10	청년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발 및 디자인	수의	'18. 8. 3.	15,000	15,000	위너클럽동조합	3191
	11	청년허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수의	'18. 8.21.	14,400	14,400	최지원	3373
	12	서울형 깎이어 지원방안 기초 연구	수의	'18. 9.12.	22,000	22,000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3855
	13	지역기반 청년공유자산 모델 프로젝트 <빙그레 커먼즈> 기 획 및 운영	수의	'18. 9.19.	16,500	16,500	협동조합 성북신나	3854
	14	[기획연구] 청년허브 지원사 업 맥락 분석 연구	수의	'18. 10.12.	33,000	33,000	(주)도원교육	4486
	15	[기획연구] 청년학교 방향성 정립 및 교안 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	수의	'18. 10.19.	16,500	16,500	주식회사 인생도서관	4481
	16	청년허브 데이터 통합 및 지 원사업 관리를 위한 DB데이 터 구축	수의	'18.10.22.	16,500	16,500	코드나무	4411
	17	[기획연구]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 안 연구	수의	'18.10.22.	15,000	15,000	마을학회 일소공도	4500
	18	[기획연구] 청년 생산활동 촉 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 연구	수의	'18.10.22.	37,800	37,800	저스트프로젝트	4527
	19	N개의 공론장 <온라인공론장>	수의	'18.10.23.	33,000	33,000	일이삼컬렉터	4467
	20	[기획연구]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 협력 플랫폼 구 축방안 연구	수의	'18.10.23.	15,000	15,000	재단법인 랩2050	4536
	21	참여자 분석을 통한 청년허브 지원사업 발전방향 컨설팅	수의	'18.11. 1.	22,000	22,000	포씨씨랩	4584
	22	청년허브 장애인 화장실 편의 시설 개선공사	수의	'18.11. 7.	12,760	12,760	신성산업	4628
	23	청년청 공유자산 모델 프로젝 트	수의	'18.11. 9.	16,500	16,500	주식회사 테크리포트	4729
	24	청년허브 지원사업 회계정산	수의	'18.11.19.	27,000	27,000	라운세무회계	4872
	25	청년청 콘텐츠 아카이빙 및 홍보물 제작	수의	'18.11.19.	13,425	13,425	쪽프레스	4957
	26	청년허브 에너지 효율을 위한 창호 제작	수의	'18.11.30.	21,560	21,560	미성산업	5334
	27	청년허브 연구 결과물 제작	수의	'18.11.30.	15,300	15,300	주식회사 더디앤씨	5402
	28	가구보수/리폼 및 목조구조 작업	수의	'18.11.30.	10,750	10,750	문화로놀이장	5009
2019	29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 개의 공론장 기획형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시 작되는 변화)	수의	'19. 8.26.	16,280	16,280	(주)보틀팩토리	3680
	30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2부형 (왜 이리와 편하게 여행할 수 없 을까?)	수의	'19. 9. 2.	20,911	20,911	(사)한국장애인권광협회	4414
	31	청년 직업살림 지원사업 청년업 아카이빙 북 제작	수의	'19. 8. 2.	15,000	15,000	삼오위크룸	3314
	32	그룹웨어시스템 신규서버 구입 및 설치	수의	'19. 9. 2.	54,900	54,900	(주)월드소프트	4119

연도	연번	용역사업명	계약방법	계약일	예산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수행단체 (개인)	방침서
	33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계약	수의	'19. 4.30.	20,684	20,684	듣는연구소	1873
	34	청년청 공간운영을 위한 공간구성 사안물 제작	수의	'19. 7. 5.	18,040	18,040	이 제	2840
	35	청년허브 정책 및 기관홍보 사업	수의	'19. 6.24.	54,900	54,900	포씨씨랩	2837
	36	[기획연구]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이별이주 00' 확대 및 발전방안	수의	'19. 7. 5.	16,500	16,500	마을학회 일소공도	4196
	36	[기획연구] 청년 창의생신활동 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수의	'19. 8.26.	15,000	15,000	재단법인 걸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4149
	37	[기획연구] 아시아 액티비스트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 디자인	수의	'19. 9.11.	27,500	27,500	주식회사 씨닷	4067
	38	2019 N개의 공론장 오퍼레이션	수의	'19. 7.10.	10,000	10,000	주식회사 비아씨피취	2965
	39	2019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x 사단법인 아시아사랑나눔 공동협력사업 <유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수의	'19. 8.30.	15,000	15,000	사단법인아시아사랑나눔	3942

- 따라서, 청년청은 민간위탁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위탁한 사무들을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 등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경우에도 현행 법인에 추가 수탁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동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새로운 사무인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서울혁신파크 22동(4,295.7m²))' 관리 등을 추가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에는 현재 50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음.

<p>-추가 공유재산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서울혁신파크 22동(4,295.7m²))</p> <p>-추가 사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직영으로 업무수행의 적시성의 저하 · 혁신파크 내 청년지원기관을 통합하고, 기존 청년허브의 조직·인력 활용으로 예산의 절감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강화 필요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 <p>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u> </div>
--

- 추가되는 사무는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사무로, 「2020 공유재산 업무 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수탁자 선정 후, 사무와 재산을 동시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비교 〉

구분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정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하는 것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공유재산법 제27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위탁대상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오장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사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업무	관리운영에 있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 - 민간운영이 활성화되는 경우 / 문화예술회관, 체육 시설 등 -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 특별한 기술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주차장 등
경신기간	3년, 재위탁 가능, 재위탁 시 수탁기관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5년 이내로 한번만 경신, 수익대상인 경우 수탁자 평가 후 두 번 이상 경신가능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은 지방계약법령과 예규적용)
수탁자선정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 : 회고가 낙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협상에 의한 경우 적용 가능
위탁료산정	수입과 지출 사후정산, 차액지원 등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 및 원가계산 서식을 적용하여 산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적용)
조례와의관계	개별조례 필요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필요

※ 사무의 민간 위탁과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 되는 경우
: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 수탁자 선정 후, 사무와 재산을 동시에 위탁
※ 관리위탁을 혼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 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자의적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자의적, 편법적 공유재산 관리가 만연한 상황인바, 동 편람에서 지시하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청년청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서 동 사업은 타 부서와 업무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없음

- 청년허브는 청년정책개발 및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타부서의 업무와 중복성이 없음.

- 여전히 ‘청년 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등과의 업무 중복 및 불명확한 정체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 정책집단을 청년으로 한정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고는 하나,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창업허브”, “창업꿈터” 등과 일정부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청년청은 청년지원기관의 통합 및 타 민간위탁기관과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265	3,508	3,213	3,977	4,559	3,749	2,989	2,827	28,08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3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청년활동과 청년공간의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등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규정 업무의 수행, 청년들의 자립 실험 공간인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에 따라
- 다.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1층), 22동	
지 원 시 설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문카페, 자립실험 공간	
위 치 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신규) ※ 기존 위탁기간 : '18.1.1. ~ '20.12.31.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시설 운영 일체

① 시설 관리 운영(청년허브, 청년청)

- 운영시간 : 09:00~21:00(상황에 따라 변경운영 가능)
- 이용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시설관리 : 유지보수, 공간대여 등

② 청년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①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 도시의 생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과 도시를 연구
 - 청년들의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청년이슈 발굴 및 공론화
 - 청년과 시민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축적·공유
- ③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소규모 커뮤니티의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그룹을 지원 등
 - 청년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해 활동 중인 청년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
 -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관련된 연구 수행
- ④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창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홍보 지원
- ⑤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 가업/창업/부업을 주제로 하는 청년 직업실험의 지원
 - 청년들의 자립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의 지원 및 협력 프로젝트 진행
 - 일과 자아실현을 연결시키기 위한 창의적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 ⑥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 ⑦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 지역상생 교류사업 운영 등
- ⑧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3,284백만원('21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센터 운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과 청년당사자, 청년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의 구성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창의성 제고가 필요
- 시설관리, 연구 수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영 시 정원 증원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운영의 효율에 한계가 있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청 청년사업팀 박경우(☎ 2133-6582)